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62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황성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7.

4. 접수 제68693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7. 4. 접수 제68694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8. 7. 4. 접수 제686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8. 11. 5.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주상복합아파트 도배, 마루공사를 대금 5,500만 원에 수급하여 2018. 11. 15.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C은 2018.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원고로서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그 공사현장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신청일(2019. 9. 24.) 무렵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8. 1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신탁계약 후에야 비로소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대 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84.6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85분의 27.0413

2.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대 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G호 철근콘크리트조 84.6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85분의 27.0413

3.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대 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84.6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85분의 27.0413

4.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도로명주소] 대구 달서구 D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E 대 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84.67㎡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85분의 27.0413

끝.

